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8. 27.
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: 2020. 8. 14. /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8. 19.

다. 상정일자: 2020. 8. 26.

(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스마트포용도시국장

나. 제안이유

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스 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지원 근거 및 대상(안 제3조)

1) 가스타이머 콕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

- 2)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
- 다. 가스타이머 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범위(안 제4조~제5조)
- 1) 설치비용 100분의 80까지 지원: 70세 이상 주민
 - 2) 설치비용 전액 지원: 치매환자, 70세 이상 주민 중 수급자, 장애인,
차상위계층

라. 가스타이머 콕 보조금 신청방법 및 감독 등(안 제6조~제8조)

- 1)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작성·제출로 보조금 신청
- 2)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
관리 및 사업법」 제46조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43조의2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7. 9. ~ 2020. 7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기
위해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여 구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
가스안전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, 제1조
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까지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
되어 있습니다.

- 지난해 가스사고 유형¹⁾을 살펴보면 LP가스 77건, 도시가스 32건, 고압가스 9건으로 총 118건이며, 원인은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가 29건,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5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쿡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
- 안 제4조에 따르면 지원대상 선정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을 규정하고, 안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 전액 지원범위를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, 70세 이상 주민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명시하였는데,
- 서울시와 우리구 안전관리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액 지원사업과는 지원 대상을 다르게 선정하고, 보조금 지급 비율에 차등을 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현재까지 충남 서산시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,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므로,
- 향후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 선정 및 사후 관리, 예산 확보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, 보조금 지급시 「지방재정법」, 「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, 화재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1) 출처: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현황 통계(2019)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
7. 토론요지: 없음.

8. 심사결과: 심사 중 황선화 위원, 이민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,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,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.

※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첨부(별첨 #1)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[별첨 1]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479-1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8. .

제 출 자: 복지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 제정 후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,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1) 안 제3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,
- (2)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되, 제3조의 제목을 “적용범위”로 하고,
- (3) 안 제6조제1항 중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고,
- (4)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나. 종전의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종전의 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6조제3항으로 한다.

(2) 제6조제3항(종전의 안 제9조) 본문 중 조문 앞부분에 “보조금과 관련하여”를 추가하여 “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”로 하고,

다. 안 제10조 본문 중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수정하고,

라. 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을 제4조로 하고,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제목을 “적용 범위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중전의 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6조3항으로 하고 본문 중 조문 앞부분에 “보조금과 관련하여”를 추가하여 “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”로 한다.

안 제10조 본문 중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
“202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3조</u>(가스타이머 록 보급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</p>	<p><u>제4조</u>(가스타이머 록 보급 지원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3조</u>(적용범위)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.</p>
<p><u>제4조</u>(지원대상자 선정)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제5조</u>(지원대상자 선정)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5조</u>(보조금 지원범위) ①구청장은 <u>제4조</u>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<u>제6조</u>(보조금 지원범위) ① 구청장은 <u>제3조</u>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 <p>1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로 <u>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</u>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
<p><u>제6조</u>(보조금 신청 방법) (생략)</p> <p><u>제7조</u>(감독 등) (생략)</p> <p><u>제8조</u>(환수조치) (생략)</p>	<p><u>제7조</u>(보조금 신청 방법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8조</u>(감독 등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9조</u>(환수조치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9조</u>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삭제>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p>	<p><u>제6조</u>(보조금의 지원범위) ③ <u>보조금과 관련하여 ----- -----</u></p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-----
----- 정한다.

부 칙

----- 2021년 1월 1일-----